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상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기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치모델링센터·기상기후인재개발원·국가기상위성센터”를 “수치예보센터·기상기후인재개발원·국가기상위성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국장 밑에 관리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관리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예·특보 제도 개선

제3장의 제목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모델”을 “수치예보가이던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개선”을 “개선·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한다.

제17조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27명”을 “28명”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청”을 “기상청과 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평가대상”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 및”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431”을 “434”로, 일반직 계 “430”을 “433”으로,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3급 또는 4급 이하 “418”을 “420”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기상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제28조제1항 관련)”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8조제1항 관련)

1. 기상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예보총괄관리관	1명
나. 예보총괄관리관 1개 과	0명

2. 기상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관리 업무(지방기상청)	20명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9조 관련)

1. 제2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8급 이하	4

2. 제2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u>수치모델링센터</u> · <u>기상기후인재개발원</u> · <u>국가기상위성센터</u> 및 <u>기상레이더센터</u> 를 둔다. ②·③ (생략)	제2조(소속기관) ① ----- ----- ----- <u>수치예보센터</u> · <u>기상기후인재개발원</u> · <u>국가기상위성센터</u> ----- -----.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u><신설></u> 제3장 <u>수치모델링센터</u>	제10조(예보국) ① ----- --- 두며, 국장 밑에 <u>관리관등 1명</u> 을 둔다. ② 국장 및 관리관등 1명----- -----. ③ ----- --.
제15조(직무) <u>수치모델링센터</u> 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3. (생략) 4. <u>자료동화 및 동네예보모델 운영·관리</u> 5.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u>개선</u>	제15조(직무) <u>수치예보센터</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치예보가이드스</u> ----- ----- 5. ----- <u>개선·운영·관리</u>

제7장 <u>평가대상 정원</u>	제7장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28조(<u>평가대상 정원</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기상청</u> 소속기관에 두는 <u>평가대상</u>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① ----- <u>기상청과 그</u> ----- <u>평가대상 조직 및</u> -----.
② 제1항에 따른 <u>평가대상</u>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 <u>평가대상 조직 및</u> -----.
제29조(<u>한시정원</u>) (생 략)	제29조(<u>한시정원</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431		434	+3
	.		.		.	
	.		.		.	
일반직 계			430		433	+3
고위공무원단			7		8	+1
3급 또는 4급 이하			418		420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0